

영등포구의회  
제221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5. 11.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19호로 2020년 4월 2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위탁 및 운영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외에 타 기관에 위탁 및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독서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영등포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 나. 시설관리공단 또는 문화재단을 수탁자로 선정할 경우 위탁선정 절차 생략(안 제9조제6항)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2020. 1. 23. ~ 2. 12.)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청소년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위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9조에서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시설관리공단 또는 영등포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외에 영등포문화재단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구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기존에 도서관 및 청소년 시설 운영관리 및 청소년 문화 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 수행 경험이 풍부하여 청소년독서실 이용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증진과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참 고 자 료

##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 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3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활동 및 보급
2. 영등포구민회관 및 대림, 문래 정보문화도서관 등 구립 도서관 운영 관리
3.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및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과 교류 사업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및 조사·연구
5.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6.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